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선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0.

발 의 자 : 백선희·황운하·서왕진
강경숙·정춘생·박희승
권향엽·이주희·김재원
손명수·신장식·김영호
이해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,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.

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).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본계획에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 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2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에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 ① 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중·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기본계획에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	제21조(연도별 시행계획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② ~ ⑤ (생략)	<u>는 시행계획에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</u>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	--